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46602 판결 [영업금지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466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가합55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1. C

피고2. D

피고, 항소인3. F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 선고 2017. 9.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가합550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E빌딩 제3층 제304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 원고 B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은 128,466,399원과 그 중 40,268,543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88,197,856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각 2017. 9.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는 피고(선정당사자) C와 공동하여 위 128,466,399원 중 53,348,732원과 그 중 40,268,543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13,080,1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각 2017. 9.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선정당사자) C와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 B은 피고(선정당사자) C에게 4,083,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9.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C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과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나. 원고 A과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C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 생긴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선정당사자) C이,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다. 원고 B과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 F가,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라.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 1)항과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과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2) 원고 B의 피고 C과 피고 F에 대한 청구(원고 B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가) 피고 C은 원고 B에게 142,994,336원과 그 중 43,284,142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99,710,194원에 대하여는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F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142,994,336원 중 58,826,974원과 그
중 43,284,142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15,542,832원에 대하여는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과 선정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피고
C과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 B은 피고 C에게 44,831,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F'를 모두 '피고 F'로, 제5쪽 제19행과 제10쪽 제8행의 각 'F'를 각 '피고 F'로 각 고친다.
- 2)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 전체를 아래 부분으로 바꾼다.
『도 약사로서 그 무렵 피고 F가 운영하던 위 약국을 인수하여 2016. 6. 30.까지 위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9, 2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에서도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 4)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임대할 것이라고 하여'를 "임대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1차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한참 지나도록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 C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C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1층 점포의 약국 영업 독점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응하여"로 고친다.
- 5)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의하면'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를, 같은 쪽 제11행의 '제3호증의 1' 앞에 '제1호증의 1, 2,'를, 같은 행의 '올라 제6호증' 뒤에 ', 제9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6) 제1심 판결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의 '보이므로 1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에 관한 특약사항은'을 "보이며, 또한 1차 매매계약서 자체에 약국 독점권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상가를 타인에게 매매나 임대시에도 1층 점포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약사항이"로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F'를 'F와 I'으로, 제10쪽 제1행의 '위 선정자'를 '피고 F'로 각 고친다.

8) 제1심 판결 제10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9 내지 12행의 '없으므로'부터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서 같은 쪽 제12행의 '따라서' 뒤에 '앞서 본 기본 법리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없으며, ④ 또한 이미 원고 B이 2012. 12. 21.경부터 1층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같은 건물 3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려는 피고 F로서는 보다 면밀하게 업종제한약정의 유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원고 B에게 요구하여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였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대인은 1층 점포를 약국 독점으로 분양받음'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피고 F는 피고 C과의 임대차계약시인 2015. 6. 13.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현재 1층 약국과 최초 분양계약서상 법적문제 발생시 임대인이 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바(을가 제16호증의 3의 기재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약국 영업을 시작할 무렵 이미 위와 같은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책임을 피고 C에게 지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 제1심 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제12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1) 피고 C의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한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B이 입은 손해는 피고 C이 피고 F와 I으로 하여금 304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원고 B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차액으로 볼 수 있고, 피고 F의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한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B이 입은 손해는 피고 F가 약국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원고 B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원고 B은 제1심에서 피고 C과 피고 F에게 2015. 7.부터 2015.

1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 C에게는 추가로 2015. 12.부터 2016. 6.까지의 기간(I이 약국 영업을 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 F에게는 추가로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전체 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 아래 사실은 제1심 법원과 당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와 I이 304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 B이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수용률(이 사건 상가에 있는 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원고 B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처방전의 비율)은 평균 98.18% 정도였는데, 피고 F가 약국을 개설한 2015. 7.부터 2015. 10.까지 원고 B이 운영하는 약국의 처방수용률은 평균 57.5%대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원고 B과 피고 F가 운영하는 약국의 전체 처방수용률은 평균 98.89%였다. 또한 2015. 12.부터 2016. 6.까지의 기간 동안 위 두 약국의 처방수용률은 원고 B이 운영하는 약국이 평균 42.32%, 피고 F와 I이 운영한 약국이 평균 56.92%로 두 약국의 처방수용률이 역전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두 약국의 전체 처방수용률은 평균 99.24%였다.

나) 2015. 7.부터 2016. 6.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 내 의원들이 발행한 처방전 중 원고 B과 피고 F 및 I이 수용한 처방전은 합계 40,046건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조제료 수입 합계는 286,421,634원(= 원고 B 143,427,298원 + 피고 F와 I 142,994,336원)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가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원고 B이 운영한 약국의 처방수용률이 평균 98.18% 정도였고, 피고 F가 약국을 개설한 이후 피고 F 운영 약국과 원고 B 운영 약국의 전체 처방수용률은 평균 98.89%로서 그 전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두 약국의 전체 처방수용률이 평균 99.24%로서 큰 차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 F가 2015. 7.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그리고 I이 2016. 1.부터 2016. 6.까지 기간 동안 304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B은 위 40,046건의 처방전을 모두 수용하여 286,421,634원의 조제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이 실제로 얻은 조제료 수입은 143,427,298원이므로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은 142,994,336원(= 286,421,634원 - 143,427,298원)이고, 위 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피고 F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 B의 손해가 된다.

4)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 B이 304호 점포의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까지 모두 수용하여 조제하였을

경우 원고 B의 일일 평균 조제 건수는 75건이 넘게 되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2호)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III. 차등수가1)의 적용을 받아 조제료가 삭감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공휴일 근무를 통하여 조제료 삭감을 300,000원 이내로 조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 표2)의 '차감액1' 항목은 원고 B의 주장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내내 빠짐없이 근무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산정한 최소한의 조제료 삭감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감액1' 항목의 액수만큼은 원고 B의 조제료 손실액(304호 점포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원고 B이 공휴일에는 약국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아래 표의 '차감액2'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게 되면 피고 C과 피고 F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 B의 손해는 128,466,399원(= 위 142,994,336원 - 14,527,937원)3) 이 된다.

2015. 7	2,349	17,246,240	31	27	0.999	0.986	17,246	241,447
2015. 8	2,470	18,297,834	31	25	0.994	0.976	109,787	439,148
2015. 9.	3,341	23,117,450	30	23	0.952	0.905	1,109,638	2,196,158
2015. 10	3,198	22,565,986	31	25	0.968	0.926	722,112	1,669,883
2015. 11.	3,342	22,016,990	30	25	0.952	0.918	1,056,816	1,805,393
2015. 12	4,237	28,972,272	31	26	0.915	0.868	2,462,643	3,824,340
2016. 1.	2,721	19,687,889	31	24	0.985	0.948	295,318	1,023,770
2016. 2	3,581	26,446,424	29	22	0.932	0.869	1,798,357	3,464,482
2016. 3.	4,128	29,573,706	31	26	0.919	0.878	2,395,470	3,607,992
2016. 4.	3,905	28,394,019	30	26	0.923	0.899	2,186,339	2,867,796
2016. 5	3,572	26,262,545	31	24	0.945	0.901	1,444,440	2,599,992
2016. 6.	3,202	23,840,279	30	25	0.961	0.926	929,771	1,764,181
합계							14,527,937	25,504,582

나아가 피고 C과 피고 F는 위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04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되기 전이나 후에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원고 B이 304호

점포에서 약국이 운영된 이후에 종전보다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덜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304호

점포에서의 약국 운영이 없었더라면 원고 B이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더 지출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한 피고 F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

제2항 추가 판단 사항에서 살펴본다).

5)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B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 B이 제1심과 당심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당심의 각 인용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15. 7.	5,009,420	17,246	43,284,142	40,268,543	
2015. 8.	7,267,203	109,787			
2015. 9.	9,594,096	1,109,638			
2015. 10.	10,252,877	722,112			
2015. 11.	11,160,546	1,056,816			
합계	43,284,142	3,015,599			
2015. 12.	15,542,832	2,462,643	99,710,194		15,542,83213) 피고 F에 대한 당심 추가청구금액
2016. 1.	9,308,915	295,318	99,710,19414) 피고 C에 대한 당심 추가청구금액	88,197,856	
2016. 2.	14,523,017	1,798,357			
2016. 3.	16,739,846	2,395,470			
2016. 4.	15,133,239	2,186,339			
2016. 5.	14,407,308	1,444,440			
2016. 6.	14,055,037	929,771			
합계	99,710,194	11,512,338			
총합계	142,994,336	14,527,937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28,466,399원(= 40,268,543원 + 88,197,856원)과 그 중 40,268,543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6.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5. 4.부터, 88,197,856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각 피고 C과 피고 F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128,466,399원 중 53,348,732원(= 40,268,543원 + 13,080,189원)과 그 중 40,268,543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6.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5. 4.부터, 13,080,189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2017.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각 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인 제12쪽 제20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과 선정자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C과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C과 피고 F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가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 C의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피고 D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과 피고 F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F와 관련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피고 F가 약국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원고 B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차액으로서 조제로 손실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조제로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더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F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F는 당심에서 304호 점포에서의 약국 운영이 없었더라면 원고 B은 약국 운영을 위하여 새로이 약사의 추가 고용비용과 카드수수료의 증가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더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주장과 같은 추가, 증가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나 지출할 추가, 증가 비용의 정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 제1의 나.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조제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F가 지적하는 차등수가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6. 7. 29. 피고 C으로부터 44,831,69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가지급물로 수령한 위 돈은 당심 인용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지급물의 지급일인 2016. 7. 29.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손해배상금의 원리금을 합산한 40,748,455원 [= 40,268,543원 + 479,912원 {40,268,543원 × 연 5% × 87일(2016. 5. 4.부터 2016. 7. 29.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4,083,243원(= 44,831,698원 - 40,748,455원)이 되므로, 원고 B은 피고 C에게 4,083,243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 C이 구하는 2016. 7. 30.부터 원고 B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송석봉

판사최은정

별지

1) 차등수가제란 의사,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건수(진찰 횟수)와 조제 건수(처방전 매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 조제료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 보건복지부고시에서의 '차등수가' 기재에 의하면 약사 1인이 하루에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은 75건을 합리적 최대치로 보고, 해당 월의 조제 건수를 조제 일수(공휴일 제외)로 나눠서, 처방전이 1일 평균 75건을 상회하는 지점부터는 차감하여(75건 이하 : 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150건을 초과한 건 : 50%)조제료를 지급한다. 해당 월의 조제 건수와 조제일을 바탕으로 위 차감율을 반영, 계산하여 '차등지수'를 산출하는데 차등지수의 기본 값은 '75건 이하'의 경우로서 1이다(보다 자세한 차등지수의 산출방식은 위 '차등수가' 중 다.항(그 내용은 별지 'III. 차등수가의 다.항' 기재와 같다)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피고 F가 산정하는 방식처럼(피고 F 제출의 2017. 7. 13.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4사5입을 한다).

2) 위와 같은 '차등수가'를 제1심 법원과 당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 대입하여 산정한 것이다.

3) 엄밀하게 하자면, 보다 정확한 산식은 '128,466,399원(= 286,421,634원 - 14,527,937원 - 143,427,298원)'이 될 것이다.

4) 원고 B의 약국과 304호 점포 약국의 조제 건수 합계

5) 원고 B의 약국과 304호 점포 약국의 조제료 합계

6) 공휴일을 포함한 월간 일수

7) 공휴일을 제외한 월간 일수